

# 2021년도 제1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2021. 6. 1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I.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 1. 세입예산

○ 없음

###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6,802	6,602	200	3.0%
일반회계	93	93	-	-
도시개발특별회계	6,709	6,509	200	3.1%
사업비	6,709	6,509	200	3.1%

## II.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비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 조성	500	300	200	66.7%

### Ⅲ. 검토의견

- 세입예산은 없음.
- 공공개발기획단의 '21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66억 2백만 원) 대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만 2억 원 증액(3.1%)된 68억 2백만 원으로,
-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 조성' 사업<sup>1)</sup>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수료 2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단위 : 백만 원)

사 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 조성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의뢰 및 수수료 비용 편성	500	300	200	66.7%

- 이 사업의 지난해 예산은 3억 5천만 원이었으며, 이 중 2억 원을 이미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sup>2)</sup> 수수료로 편성한 바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타당성조사가 작년 하반기에 반려됨에 따라('20.10.16.), 이월 조치 또는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채 불용처리 하였음.

1) 이 사업은 의료시설이 취약한 동북권 지역에 어린이 전문병원을 건립하여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기존 청사(현 북부도로사업소·북부수도사업소)를 복합개발하려는 목적으로, 2018년 서울시 균형발전 대책인 '동고동락'에서 발표된 바 있음. 이 후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부지선정과 개발구상 마련을 위한 용역을 착수('19.6)하였고, 용역 수행 과정에서 부지가 결정('20.6)되었으며, 이에 따라 병원 운영계획 수립은 보건의료정책과(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용역을 착수·시행하였음('20.7~'20.10).

2)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2,262억 4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서울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행) 대상임. (붙임-1. 참조)

## 〈사업 추진경위〉

- ▶ `18. 08. : 서울시 동고동락 발표(강북권역 어린이병원 건립추진)
- ▶ `19. 06. : 「어린이전문병원 부지선정 및 개발구상 용역」 착수
- ▶ `19. 08. : 기본계획 수립 및 복합개발 부지선정(現, 북부도로·수도사업소)
- ▶ `20. 02. : 용역 설계변경(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 목 적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통합 추진
- 변경내용 : (당초) 개발구상 → (변경) 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 용 역 비 : (당초) 190백만원 → (변경) 340백만원(증150)
- 기간연장 : 2019.6.19.~2020.4.20. → (변경) 2020.12.20.(8개월 연장)

- ▶ `20. 06. : 부지 결정(북부수도사업소 등 기존 공공청사 복합화)
- ▶ `20. 07. :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운영계획** 착수(보건의료정책과, `20.10 완료)
- ▶ `20. 08. : 강북어린이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추진계획 수립 방침,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의뢰(재정균형발전담당관→행정안전부)

복합개발 계획(안) 확정 : 지상14층/64,637㎡, 214병상, 공공청사

- ▶ `20. 10. :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착수(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1.4완료)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의뢰 반려**(지방재정연구원→보건의료정책과)

사 유:어린이병원의 상세운영계획 및 의료장비 등 시설계획을 보완하여 재의뢰 할 것

- ▶ `20. 11. : 용역 준공기한 연기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21.6.20.까지 6개월 연장)
- ▶ `21. 04. :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의뢰(공공개발기획단→재정균형발전담당관)
- ▶ `21. 05. :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관련 대상사업 사전설명(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당시 타당성조사 반려 사유는 ‘어린이 전문병원의 상세 운영계획 및 의료장비 등 시설계획을 보완하여 재의뢰’하라는 것이었으나, 타당성 조사 의뢰기간이 법률에 정해져있고<sup>3)</sup> 서울시가 의뢰한 시기가 지난해 마지막 의뢰기간이었기 때문에 같은 해 재의뢰가 불가능함에 따라 금년도 추경으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3) 「지방재정법」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까지, 3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4차 의뢰는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 한편,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주관한 ‘강북어린이병원 운영계획 수립’(이하 ‘운영계획’) 용역은 부지가 결정된 이후인 7월에 착수함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던 당시(‘20.8)에는 세부 운영계획과 의료장비 등 시설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금년도에 운영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조사를 재의뢰(‘21.4)하였음.

〈관련 용역개요〉

용역명	『어린이전문병원 부지선정 및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붙임-2	『강북어린이병원 운영계획』 ※붙임-3
용역주관	공공개발기획단	보건의료정책과(공공보건의료재단)
용역기간	‘19. 6. ~ ‘21. 6. (24개월)	‘20. 7. ~ ‘20. 10.
계약금액	340백만원(기본구상 190 + 기본계획 150)	(공공보건의료재단 집행)
수행기관	(주)건축사사무소 디자인유니트 디엠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전문병원 부지선정 및 개발구상(안) 수립</li> <li>▶ 어린이전문병원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li> <li>▶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어린이병원 운영사례 분석</li> <li>▶ 진료권 분석 및 필요병상 규모</li> <li>▶ 운영형태 및 조직·인력계획</li> <li>▶ 년차별 사업 추진계획</li> <li>▶ 건축계획 및 의료장비계획 등</li> </ul>

- 재의뢰 결과, 서울시(공공개발기획단)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서울 강북 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업무 약정을 체결(‘21.6.10.) 하였으며, 약정금액(수수료)은 1억 5,700만 원으로 확인됨.
- 이에 예산의 불용 방지를 위하여 추경 증액분 2억 원 중 4천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단위 : 백만 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B)	수정안 (C)	기정예산 (A)	증 감 (C-A)	증감률(%)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 조성	500	460	300	160	55.3

- 한편,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가 한 차례 반려되면서 사업기간이 늘어났고, 2020회계연도 예산에서 불용되는 등 비효율적인 집행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기획 단계부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다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 지 현
연 락 처	02-2180-8216
이 메 일	cjh1786@seoul.go.kr

## 【붙임-1】 관련 규정

###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까지, 3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4차 의뢰는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2. 29., 2020. 9. 11.>

###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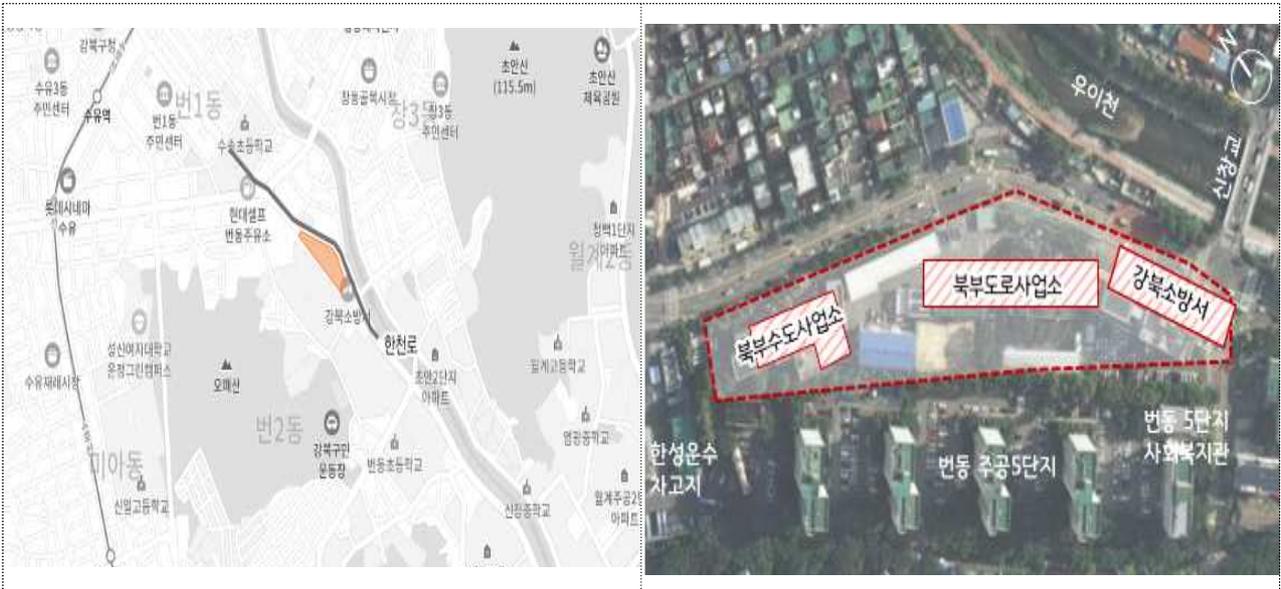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이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 【붙임-2】 강북어린이병원 · 공공청사 복합개발 기본계획(안)

### ○ 대상지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 365-1)외 7필지
- 면 적 : 16,365.3㎡
-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 20%, 용적률 60%, 높이 4층이하

### ○ 위치도 및 현황(북부수도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강북소방서)



### ○ 건축계획(안)

사업명	강북 어린이병원 · 공공청사 복합개발		
대지위치/면적	서울시 강북구 번동 365-1번지의외 5필지(16,365.3㎡)		
건축면적	7,681.4㎡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69,372.9㎡	건축규모	지하3층 지상14층
용적률	244.86%	건폐율	46.94%
용도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 의료시설(병원)		

※ 신축건축물 및 기존건축물(강북소방서) 면적 포함

○ 배치도



○ 어린이병원 운영계획(안)

- 적정병상 규모

구 분		병상수	비 고
일반병동 및 재활동	1인실	14실/ 14병상	음압병실 4병상 포함
	2인실	36실/ 72병상	음압병실 2병상 포함
	4인실	30실/120병상	
소아중환자실		8병상	음압병실 1병상 포함
<b>운영 병상수</b>		<b>214병상</b>	정신과 보호병동 12병상포함 재활병동 80병상 포함
응급실		6병상	음압병실 1병상 포함
수술실		2실	

- 운영방안

- 종합병원급 소아 중심의 진료과를 설치 운영하는 병원
- 응급의학과와 내과를 운영하는 병원
- 아급성기 환자 치료를 위한 재활치료실과 재활 병동 운영
- 재활환자를 위한 임상시험 등 연구·교육 시설을 포함한 병원
- 소아·청소년을 위한 가족실과 놀이시설, 교육시설 등 환자 친화 공간 확대운영

## **【붙임-3】 강북어린이병원 운영계획 용역개요**

용역수행 :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기간 : '20. 7. ~ '20. 10.

주요내용

- 국내 어린이병원 운영사례 분석
- 진료권 분석 및 필요병상 규모
- 운영형태 및 조직·인력계획
- 년차별 사업 추진계획
- 건축계획 및 의료장비계획 등